



[2017.3.30.] [27971 , 2017.3.29.,]

() 044 - 200 - 5742, 5741

1 () 「 」 . < 2007.5.25., 2015.3.24.>

2 () . <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1. " " 가. 「 」 2 1 3 가 . 「 」 2 1 3 . 20 29 40 122

2. " " 2 2. " " 「 」 2 10 .

2 3. " " 2 2 .

3. " " 4 .

4. " " 「 」 2 1 () .

5. " " 25 .

6. " " .

7. " " .

()

8. " " .

9. " " 100 80 .

10. " " .

3 () 「 」 (" ") 2 1 " " 500 . < 2001.8.10., 2012.2.22., 2015.3.24.>

3 2() 2 5 " " 1 . < 2012.2.22.>

1 가

. <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2

1

. <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2

가

3

. < 1997.5.24., 2008.2.29.,

2015.1.6.>

[1991.1.29.]

4 () 4 2 .<

2011.2.14., 2013.4.22., 2015.3.24.>

1. (" ")
 - 가. 1 6 , (「 」 2 8)
 - . 5 • 6 (16 5 6)
 - . 6 (100 1)
2. 5 • 6 . .
3. 5 • 6 .
- 3 2. 6 「 」 55
4. (「 」)
5. (WIG: Wing In Ground Effect)가 ()
6. 가
- 1 1 가
- 1 ,

2008.2.29., 2013.3.23.>

[2007.5.25.]

4 2() 4 4

[2001.8.10.]

5 () 5 1 4 .

<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
 - 가. 3 6
 - . 3 6
 - . 1 4
2. 12 3 5
3. 13 4 6 , 6

- 4. 14 1
- 5. 14 2 2
- 6.
 - 1
 - < 2001.8.10., 2008.2.29., 2013.3.23.>
 - 5 1 1 (" ") 가
 - 「 」 5 1 1
 - .< 1994.8.23., 2007.5.25., 2016.2.29.>
- 5 2() 5 (
 - .) 1 3 .< 2007.5.25.>
 - [1998.2.24.]
- 6 <1998.2.24.>
- 7 ()
 - 1 1 30 1 ,1
 - 12 1 .
- 8 ()
 - 1 3 .< 1991.1.29.>
 - <2001.8.10.>
 - 「 」 29 4 ()
 - 3 1 3 3 가 .< 1991.1.29.,
 -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 9 () .<
 -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 1.
 - 2. <2005.9.30.>
 - 3. 가 가 , 「 」 (")
 - ") 「 」 142
 - 4. <2005.9.30.>
 - 5. <2005.9.30.>
 - 가
 - .<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 2
 - (進水) (" ")
 -) 1 · 6 7 .< 2011.2.14., 2015.3.24., 2016.2.29.>
 - 1. .
 - 2. ,
 - 3.

4.
5.
6.
7.

1 3 () .<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 16 1 2 2
가

2. (,
1 , 6) 가

가. 3 4 ()
. 3 4
. 3 4

가 4 2 가
. < 2005.9.30.>

<2015.3.24.>

10 () . <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11 () 2 , . <
1996.8.8., 2008.2.29., 2013.3.23.>

4 2

. <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1998.2.24.>

「 가 」 가 가
가 「 가 」

. <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 . < 1996.8.8.,
2008.2.29., 2013.3.23.>
[1991.1.29.]

12 () . < 1991.1.29.>

. < 1998.2.24.>
. < 2011.2.14., 2015.3.24.>

1

. < 2011.2.14.>

1 5 ,
. <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13 () 2 • 2 2
가 4 ,
. < 1998.2.24.>
1 가 1 3 2
1 . <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 1. 3 가
- 2. 3 가
- 3. 3 가

18 60 2
가 2 , 60
. < 2007.5.25., 2008.2.29., 2013.3.23.>

6 • 6 가 1 3
2 2
. <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 가 . < 2001.8.10., 2008.2.29.,
2013.3.23.>

- 1. 3
- 2. 3
- 3. 3

가 4 가
. < 2001.8.10., 2008.2.29., 2013.3.23.>

[1991.1.29.]

14 () 가
12 1 3
. < 2005.9.30., 2007.5.25.>

- 1. 3715 「 」 8 1 4
- 2. 9 1 가 5 (「 」)

1 1 3

14 2 2 2

< 2008.2.29., 2013.3.23.>

[1998.2.24.]

14 2() <2001.8.10.>

3 가 1

.< 1998.9.12.>

1. 1 가 2

2. 3 가 3

[1998.2.24.]

14 3() 4 1 4
4 (9 1) 3 2 .

[2013.4.22.]

[14 3 14 4 <2013.4.22.>]

14 4() 12 3 6
「 」 1 3 4

.< 2011.2.14.>

[2007.5.25.]

[14 3 , 14 4 14 5 <2013.4.22.>]

14 5() 1 3 6 6
가 「 가 35 1 2
가 가 500 가

.< 2017.3.29.>

1 3 6 6 가 「 가 35 1
, 2 3 가 가

가 가 400 가

.< 2017.3.29.>

1 2

.< 2013.3.23.>

[2011.2.14.]

[14 4 <2013.4.22.>]

15 () 4 1 1 가

.<

2007.5.25.>

1

.< 2015.3.24.>

1.

2.

2 1 3

2 2

[1998.2.24.]

16 ()

() 1 3

. <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1. [")] 2

2. 2 , 2 3 4 2 ,

3. 1 3 1 가 2

4. 1 2 (1 3) 1 3 1

. < 1994.8.23., 1996.8.8., 1998.9.12.,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1 3 () 10

2. 6

3. <2015.3.24.> () 3 1 3

) (. <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3 , 3 , 3

2. 4 , 4 , 4

3. 1 16 2 가 . <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3 5 1 5 . <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6 2 가 ()가 5

< 2007.5.25., 2008.2.29., 2013.3.23.>

<1998.2.24.>

[1991.1.29.]

16 2(가) 가(" 가")

. <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

2. 24

1 가 5

1 가 ,

. < 2008.2.29., 2013.3.23.>

[1998.2.24.]

17 () 10 2 가
가

(" ")가 .

. <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1 1 3 ,

(「 」 87) 5 1

3 . < 2005.9.30., 2012.2.22.>

1

() . <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1 가

,

. < 2005.9.30., 2008.2.29., 2013.3.23.>

4

. < 2005.9.30., 2008.2.29., 2013.3.23.>

1

, 1

5

. <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2001.8.10.]

[2005.9.30.]

18 () 1 100 40 (60)
, 60 . < 1991.1.29., 1998.2.24.>

11 2 · 4 , 13 3 · 4 , 14 3 , 15 4

1

. < 1991.1.29., 1998.2.24.,

2007.5.25.>

100

60

. < 1998.2.24.,

2007.5.25.>

100

60

.< 2007.5.25.>

19 ()

5 3 1

- 1.
- 2.
- 3.
- 4.
- 5.
- 6.
- 7.
- 8.
- 9.

10.

가

[

,

(PDA),

(PMP),

,

,

,

(MP3 Player),

,

,

,

]

11.

5 3 1

, ,

.< 2013.3.23., 2016.2.29.>

5 3 1

가

.< 2013.3.23.>

5 3 1

.< 2013.3.23.>

[2012.2.22.]

20 ()

7

3

1

"

"

.< 2016.2.29.>

1.

5

1

2.

5

(

)

2

3.

6

(

)

3

(

)

4.

3

가. 「

」

2

2

. 「

」

76

77

1

. 「

」

9

2

,

16

. 「

」

22

.

.

가

[2015.3.24.]

21 <1997.12.31.>

22 () 11 3 . , 3 2
「 」 119

3 1 3 . < 2007.5.25., 2012.2.22.>

- 1.
2.

() ()
) •1 •1 •1
4 ,

.<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015.3.24.>

() .<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가

.< 1998.2.24.,

2008.2.29., 2013.3.23.>

가

가

.< 1998.2.24.>

「 」 21 2
()
1

.<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 」 29

4

.

.<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1. 「 」 116 가 가

2.

()가

.< 2015.3.24.>

[1991.1.29.]

22 2()

3 2 .< 1998.2.24.>

가 2

가

.< 2015.3.24.>

1. : 3

2. :

2

2

4

.< 1998.2.24.>

[1994.8.23.]

23 (가) 13 2 가

.< 1996.8.8., 2008.2.29., 2013.3.23.>

1. 가

2.

3.

13 2

가

가 가

.<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4 (•) 23 1

.<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1. 4

2. 5 3 4

2 2. 5 3 1 ,

3. 7 2

4. 9 4

5. 9

6. 10

6 2. 10 2 2

6 3. 12 2 3

7. 13 가

8. 17

9. <1999.4.7.>

10. 31

11. <2012.2.22.>

<1998.9.12.>

23 2

.<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1998.2.24.>

24 2() (24) 가 「 」 19

가 가

1. 5

2. 10 2 2

[2017.3.27.]

25 () 가 24 2 1
. <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25 2() 3 ()
3)
1. 14 : 2014 1 1
2. 16 : 2014 1 1
[2013.12.30.]

26 () 31 1 2 5 .
[2012.2.22.]

< 27971 ,2017.3.29.>

1 () 2017 3 30 . < >
2 9
10 ()

14 5 1 2 " 「 」 26 1 " " 「 」 35 1 " .

㉔

11

[별표 1] <개정 2013.3.23>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1. 제1종 자동화선박

- 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부인화설비를 구비할 것
-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
 - 2)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박 중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에는 특별히 선체의 경사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한한다)
 - 3) 위성선위측정장치
 - 4) 자동조타장치
 - 5)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 7) 하역용 사이드포트, 램프웨이 및 폭로갑판 강제햇치카바의 동력개폐장치(폰톤형의 것을 제외한다)
 - 8) 주기의 운전상태의 자동기록장치
 - 9) 선수 및 선미의 계선장치의 원격제어장치
 - 10) 위성전화통신이 가능한 설비(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
 - 11) 제어실용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

2. 제2종 자동화선박

가. 제1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외로부터 주기용 연료유탱크 주유관밸브의 원격제어장치(밸브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원격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2) 주기용 연료유탱크(기관실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고유면경보장치
- 3)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냉동컨테이너 적재선에 한한다)
- 4)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탱커에 한한다)
- 5) 자동갑판세정장치(석탄·철광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선수 및 선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
- 7)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1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8) 비상용 예인색의 동력조작장치(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3. 제3종 자동화선박

가.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박지휘실·기관제어실 및 통신실이 인접하여 있고 상호통행이 용이하여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된 항해 당직관계의 집중감시 및 제어장치
- 2)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
- 3) 기관실·계류구역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선내요소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카메라설비
- 4) 선박지휘실 현측에서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장치
- 5) 화물창빌지 고위 경보장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모든 계류색의 드럼에 감겨 있는 1개의 드럼방식인 계류원치
- 7) 1인이 조작할 수 있는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
- 8) 주방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자동접시닦이 및 건조기등을 포함한다)
- 9)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설비

비 고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 자동화선박의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가 2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해당설비 대신 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해당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삭제 <1998.2.24>

[별표 1의3] <개정 2015.3.24.>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 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선장·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 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 항 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 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3급 항 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선장 또는	3년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1등 항해사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2년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선박직원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비고

1. 5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

- 중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포함된다.
- 3.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4.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5.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운항사를 말한다.
- 6.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7.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기관사 또는 2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운항장·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기관장·운항장·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2급 기관사	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3급 기관사	4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기관의 운전		5년	
	4급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1년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의 선박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 관사를 제외한 기 관부 선박직원	2년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받 고 자 하는 면 허	승 무 경 력			
	자 격	선 박	직 무	기 간
1 급 통 신사	전 파 통 신 기 사 이 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 정		
2 급 통 신사	전 파 통 신 산 업 기 사 이 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 정		
3 급 통 신사	전 파 통 신 기 능 사 이 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함정		
4급 통신사	제한 무선 통신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함정		

나. 전파전자급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신사	전파전자 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 통신사	전파전자 산업 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3급 통신사	전파전자 기능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신사	해상 무선 통신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 조종사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말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3년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2년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4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3년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2년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2년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 상의 상선	기관사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2년 3년
4급 운항사	4급항해사또는4급기관사			

비 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또는 항공기	직무	기간	승선 시간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 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선박 직원	2년	-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			

		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
			함정의 운항	3년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선박 직원	-	200시간	
소형 수면 비행선박 조종사	5급 항해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선박 직원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어선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	
		함정의 운항	2년		
		수면비행선박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2년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1. 항해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항해계기 항로표지 해도(수로도지) 조석 및 해류 지문항법 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더 항법 항해계획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운용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선박의 이동 및 조종 선박의 복원성 당직근무 기상 및 해상 선박의 동력장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선내의료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2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상 2급 항해사 이상
법규	「개항질서법」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상법」(해상편)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6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영어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5급 항해사 이상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해사영어	승무하는 5급 항해사를 제외한다) 3급 항해사 이상
전문	상선	화물의 취급 및 적하 「선박법」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어선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어선법」 수산실무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기관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기관(1)	내연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외연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6급 기관사 이상
	연료 및 윤활제	6급 기관사 이상
기관(2)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6급 기관사 이상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6급 기관사 이상
	기계공작법	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열역학 및 열전달	3급 기관사 이상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3급 기관사 이상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3급 기관사 이상
	조선학(5급 기관사의 경우에는 선체구조에 한정한다)	5급 기관사 이상
		2급 기관사 이하
	설계제도	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기관(3)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6급 기관사 이상 6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직무일반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기관관리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기관영어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6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2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5급 기관사(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어	기관영어 해사영어	5급 기관사 이상(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3급 기관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기관(3),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의2. 전자기관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전자기관(1)	전기공학 전자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전자기관(2)	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전자항해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전력변환 시스템
직무일반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영어	기관영어 해사영어

비고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 통신사

시험과목	과 목 내 용	시험응시대상 면 허 등 급
1. 선박통신 운용	1.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2.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3.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절차 4. 선박보고시스템 5.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6.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항해용어의 이용	2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3급 통신사이상
2. 비상무선 통신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 소형선박 조종사

가. 소형선박 조종사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과목	과목내용
항해	항해계기 항법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계획
운용	선체·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 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기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법규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나. 소형선박 조종사의 실기시험

시험과목	과목내용
소형선박의 취급	출항의 준비 및 점검 출항 준비작업 및 계류 결삭(結索) 방위측정
기본조종	안전 확인 발전·직진·정지 후진 변침(變針)·선회 및 연속선회
응용조종	인명구조 피항(避航) 이안(移岸) 및 착안(着岸)

5. 운항사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면허등급	
		항해전문	기관전문
1. 항해	1. 항해계기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를 말한다)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다 항법 8. 항해계획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 운 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2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 전 문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 우에 한한다)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4. 기관(1)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5. 기관(2)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2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6. 기관(3)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3급 운항사이상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3급 운항사이상
	5. 선박자동화 시스템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7. 법규 및 직무일반	1. 「해사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 선박안전법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 「해양환경관리법」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8. 기관관리	4급 운항사이상	2급 운항사이상
8. 영 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 해사영어	3급 운항사이상	-
	3. 기관영어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비 고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전문분야의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과목명	과목내용명	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항해계기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항로표지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도(수로도지)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조석 및 해류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지문항법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천문항법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전파 및 레이더항법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항해계획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운용	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기능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수면비행선의 조종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복원성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당직근무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기상 및 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선내의료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법규	「개항질서법」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박안전법」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양환경관리법」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상법」 (해상편)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사안전법」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박법」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운실무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사관련국제협약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항공법규 개론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영어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사영어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수면비행선박공학	공기역학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유체역학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제어시스템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공기조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비행이론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동력장치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연료 및 윤활제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전기전자공학 기초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비고

1. 응시자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4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응시자가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응시자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별표 3] <개정 2016.2.29.>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제22조제1항관련)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연안 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어선의 경우 6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원양수역	2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어선의 경우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어선의 경우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어선의 경우 6급 항해사)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등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천톤 이상	선장	1급 항해사	1급 항해사	1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2급 항해사	2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비 고 :

-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인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曳舢船)의 경우 예선과 부선(舢船)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인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

한다)은 위 표의 승무기준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200톤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200톤 이상 500톤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원양수역	200톤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200톤 이상	기관장	5급 기관사
	500톤 미만	1등 기관사	6급 기관사

나. 어선 외의 선박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항행구역		주기관추진력 (킬로와트)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평수구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5급 기관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4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5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미만	1등 기관사	6급 기관사	

	수역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어선의 경우 우에는 6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어선의 경우 우에는 5급 기관사)
원양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어선의 경우 우에는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어선의 경우 우에는 5급 기관사) 5급 기관사(어선의 경우 우에는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발전기·전기기기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거나 전기기사 또는 전자기기·계측제어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영해안의 해역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이 10시간 미만(연안여객선은 6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

폐기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 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무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 1명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요트의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함)의 승무기준

선종별	선박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여객정원 250인 미만	1급 통신사
		여객정원 250인 미만	2급 통신사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통신장	3급 통신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	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1급 통신사(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3급 통신사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 통신사
		통신장	1급 통신사(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비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이를 3급 통신사로 한다.

4.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구분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객선외의 선박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여객선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	선장 및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비고

-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또는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안수역의 여객선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원양수역에서의 어선의 항행구역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으로 한다.
-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가지고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내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 자동화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		선박직원	승무자격	
	크기(총톤수 또는 주기관추진력)	유형		여객선	여객선외의 선박
연안수역	3천톤 이상	제2종 또는 제3종	선장 운항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통신장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원양수역	3천톤이상 6천톤 미만	제1종	선장 기관장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등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3등 운항사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통신장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2종	선 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기관장	2급 기관사	2급 기관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2등 운항사 (2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통신장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3종	선 장	1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운항장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기관전문)	
	1등 운항사 (2명)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2등 운항사 (3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3등 운항사 (3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6천톤 이상 또는 6천킬로와트 이상	제1종	선 장	1급 항해사	1급 항해사
		기관장	1급 기관사	1급 기관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등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2종	선 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 (2명) 통신장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3종	선 장 운항장 1등 운항사 (2명) 2등 운항사 (3명) 3등 운항사 (3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비 고

1.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2등 운항사 또는 3등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운항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항해사 및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자동화선박은 갑판부·기관부 및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3. 선박직원의 승무자격은 항해사와 운항사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사의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을 기준으로 한다.

6.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	선박의 종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연안수역	소형 수면비행선박	선장 1등 항해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선장 1등 항해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소형 수면비행선박	선장 1등 항해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선장 1등 항해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7.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인 시운전선박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갑판부의 승무기준			기관부의 승무기준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500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3천톤 이상	선장	2급 항해사			

6천톤 미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천톤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나. 어선

갑판부의 승무기준			기관부의 승무기준		
어선의 길이	선박직원	승무자격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45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500킬로 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선장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100미터 이상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별표 3의2] <개정 2015.3.24.>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비가능 선박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선상정비가능 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국제항해	여객정원 250명 이상	통신장	2급 통신사 1명	1급 통신사 1명
		여객정원 250명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화물선	국제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어선	500톤 이상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500톤 미만		통신장	4급 통신사 1명	3급 통신사 1명

[별표 4] <개정 2015.3.2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 (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3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비고 : 주 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1만톤 이상	통신장	1년 이상
2만톤 미만		
2만톤 이상	통신장	2년 이상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 장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장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운항사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 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선박의 종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소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1년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별표 5] <신설 2012.2.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100
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30
다. 선장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3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00

[별표 6] 삭제 <1999.4.7>